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통합선출관리위원회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제12기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(홍보)

- 관련: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 및 제11조(교원위원 선출)
-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, 보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및 선거 홍보 물 제작·배부하고자 합니다.
 - 공고일: 2020.03.04.
 - 입후보등록: 2020. 3. 9. ~ 3. 10 (09:00~16:30)(2일간)
 - 선거공보: 2020.3. 11. ~ 3. 16.(6일간)
 - 선거일(개표일): 2020. 3. 17. (09:00~16:30)
 - 홍보방법: 전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, 학교 홈페이지 게시

- 붙임
- 회의록(통합선출관리위원회) 1부.
 - 구성 세부 계획(학부모위원선출용) 1부.
 - 업무분장표(학부모위원선출용) 1부.
 - 학부모위원(우편) 및 교원위원 선출(학교 게시판) 공고문 1부.
 - 선거홍보문 1부. 끝.

※ 가정통신문, 우편투표 병행의 경우(단,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서 발송하지 아니함)

- 투표용지 배부: 2020. 3. 11.(1일간)
- 투표용지 회수: 2020. 3. 13. ~ 3. 16.(2일간)(토.일 제외)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

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수신자

간사 최창식 위원장 강성례
협조자
시행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
우 55706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5 접수 2020.3.3.
전화 (063)634-4970 전송 (063)631-4725 /

/비공개

교원위원 선출공고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- 가. 자격 : 1) 우리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**제33조[결격사유]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소 : 보절초등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
다. 기간 : 2020년 3월 9일 ~ 3월 10일까지(08:30~16:30)(2일간)

라. 구비서류 :

1. 입후보자 등록서 1부(사진 1매)
2.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양식: 교무실 비치.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0년 3월 17일 (11:00~16:30)

나. 선거장소 : 보절초등학교 교무실

다. 선거방법 : 보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(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)

라. 교원위원 정수: 3명 (교장-당연직, 병설유치원은 교원 1인으로 당연직 해당(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⑥))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)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0년 3월 4일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- 가. 자격 : 1)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
2)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자

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**제3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기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소 : 보절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간 : 2020년 3월 9일 ~ 3월 10일까지(08:30~16:30)(2일간)

라. 구비서류 :

1. 입후보자 등록서 1부(사진 1매)
2.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양식: 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<http://www.bojeol.es.kr>-알림마당-학교운영위원회-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텁재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18년 3월 17일 (11:00~16:30)

나. 선거장소 : 보절초등학교 강당

다. 선거방법 : 보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(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)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)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0년 3월 11일 ~ 3월 13일 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0년 3월 4일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
- 선 거 홍 보 -
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 및 교원위원회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

선출관리위원회구성[2020. 3. 3.]

-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1명 교원 1명을 통합선출관리위원회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, 투·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

선거공고[2020. 3. 4.]

- 선거일시와 장소, 위원정수, 후보자 자격 등을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원은 학교게시판이나 학교홈페이지에 공고

후보자 등록[2020. 3. 9 ~ 3. 10]

- 보절초학교운영위원회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와 교원에게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본교 행정실에 제출

선거공보[2020. 3. 11. ~ 3. 16.]

- 학부모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고, 교직원들에게는 게시판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

투표용지 회수[2020. 3. 13~3. 16.[토.일 제외]]

- 직접 학교에 출석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우편에 의하여 투표

투표실시[2020. 3. 17.]

-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해당 투표장(학교)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

개표[2020. 3. 17.]

- 투표 마감 후 개표(선출관리위원장 주관)
-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하고 교원은 교원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개봉함.

당선자 공고[2020. 3. 17.]

-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학부모 위원 4명 및 교원위원 3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

선거결과 홍보[2020. 3. 17.]

-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

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